

# 축산계열화사업 관련 사육자재, 출하가축, 사육시설 등에 관한 기준

농림축산식품부

농림축산식품부는 「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」 제7조 제3항에 따라 “사육자재의 품질 기준 및 품질표시에 관한 사항, 계약농가가 출하하는 가축의 품질기준에 관한 사항, 사육시설에 관한 사항”을 아래와 같이 제정·고시했다.

## 1. 사육자재의 품질기준 및 품질표시에 관한 사항

### 가. 사료의 품질

- 계열화사업자는 사육자에게 공급되는 사료는 한국사양표준의 영양소 요구량에 적합하여야 한다.
- 계열화사업자가 사육자에게 공급하는 사료는 “사료내 유해물질의 범위 및 허용기준(농식품부 고시 제2010-142호)에 적합하여야 한다.
- 계열화사업자는 공급되는 사료의 사료성분등록증(별지)을 사육자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사료 공급처가 변동될 경우 사육자에게 사전에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.
- 사육농가는 계열화사업자에게 사료성분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열화사업자는 사육자가 요구하는 사료의 성분분석 자료(기 분석된 자료 등)를 제시하여야 한다.

## 나. 병아리의 품질

- 계열화사업자는 공급하는 닭, 오리 병아리의 품종, 부화장, 해당 종란을 생산하는 종계(종압)장명 및 종계(종압)의 정보를 사육농가에 제시하여야 한다.
- 공급되는 병아리의 품질은 아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.
  - 다리는 균형이 잡히고 관절이 정상적이어야 한다.
  - 부리는 오염되지 않고 붉은 반점이 없으며 품종 고유의 색상을 띠고 있어야 한다.
  - 배꼽 주위 난각막 잔유물 및 잔존 난황이 없어야 한다.
  - 살모넬라, 난계대 질병 등이 없어야 하며 검사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.
- 병아리 공급 후 7일 이내 폐사율이 3% 이상일 경우 계열화사업자 책임으로 한다.
- 계열화 사업자는 병아리 운송시 스트레스를 최소화 하여야 한다.

## 2. 출하하는 가축의 품질기준에 관한 사항

- 출하가축은 도계 과정 중 유해성 세균 오염방지를 위해 상차 전 최소 3시간 이상 절식하여야 한다.
  - \* 유해성 세균 : *Campylobacter jejuni*, *Listeria monocytogenes*, *Staphylococcus aureus* 및 *E. coli* O157:H7 등을 포함한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균
- 출하 전 및 출하 시 가금(육계, 오리 및 토종닭)의 날개 및 다리 등이 부러져 있지 않아야 한다.
- 출하 시 가금(육계, 오리 및 토종닭)의 가슴, 배, 등 및 옆구리 부위에 육안으로 쉽게 관찰될 정도로 멍 또는 창상이 나타나지 아니하여야 한다.
- 계열화사업자에게 가금(육계, 오리 및 토종닭)의 출하 시 비정상적(목이 비틀어져 있는 현상 등 일반적인 가금의 형태가 아니한 것을 모두 포함)인 상태로 공급하여서는 아니된다.

### 3. 사육시설에 관한 사항

#### 가. 사육시설

- 사육농가가 위치한 지역의 외부기온에 영향을 받지 않을 정도의 적절한 단열시설을 갖추어야 한다.
  - 단열시설 : 콘크리트, 시멘트블럭, 유리, 철판, 석고보드, 합판, 나무판자, 유리솜, 콜크보드, 스티로폼, 보온덮개, 우레탄, 천막, 골드폼 및 비닐 등
- 닭(오리, 토종닭)에게 물을 급수할 수 있는 급수시설과 사료를 급여할 수 있는 급이 시설이 있어야 한다.
  - 급수시설 : 니플급수기, 일자형급수기, 중형급수기 등
- 무창계사(오리사)는 점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사내부 광도가 0.4룩스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- 무창계사(오리사)는 공기를 강제적으로 바깥으로 배기할 수 있는 환기시설이 설치되어야 하며, 팬의 크기 및 수량은 계사크기에 따라 적정한 수량이 공기를 적당하게 배분할 수 있는 위치에 배치되어야 한다.
- 개방계사(오리사)는 쾌적한 실내공기 유지를 위한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(다만, 농가 사정에 따라 자연환기시설도 인정할 수 있다).
-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면적을 확보해야 한다(붙임참조).

#### 나. 소독 및 방역시설

- 소독 및 방역 시설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.
- 축산법에 의한 축산업 허가제 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재검토기한) 이 고시는 2016년 10월 일까지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248호)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.

### 〈붙임〉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기준(닭)

#### ○ 성장단계별 마리당 사육시설 면적

구분	시설형태	소요면적	비고
산란계	케이지	0.05m <sup>2</sup> /마리	
	평사	-	
산란육성계	케이지	0.025m <sup>2</sup> /마리	100일령까지 사육
육계	무창계사		39kg/m <sup>2</sup>
	개방계사	강제환기	36kg/m <sup>2</sup>
		자연환기	33kg/m <sup>2</sup>
	케이지		0.046m <sup>2</sup> /마리

※ 토종닭은 육계 면적을 기준으로 함.

#### ○ 성장단계 기준

구분	병아리	육성계	성계
산란계·종계	3주령 미만	3주령 이상 ~ 18주령 미만	18주령 이상

※ 육성계와 병아리는 성계로 환산하여 계산함(성계1마리=육성계2마리=병아리 4마리)